


**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요약 (2022.10.18. 시행)**

구 분	관계 법령	개정 전	현 행 (2022.10.18. 시행)	비 고
	제20조 (출입의 금지 등)	-	<b>[신설] 18호 (출입의 금지 등)</b> - 굴착기 붐·암·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	
	제198조 (낙하물 보호구조)	<b>[기준]</b> - 위험한 장소(암석 낙하 우려 등)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,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<b>헤드가드</b> 를 갖추어야 함 * 차량계 건설기계 : 불도저, 트랙터, 셔블, 로더, 파워 셔블, 드래그 셔블	<b>[개정]</b> - 헤드가드 → <b>낙하물 보호구조</b> 로 명칭 변경 * 차량계 건설기계 : 불도저, 트랙터, 로더, <b>굴착기, 스크레이퍼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, 롤러, 천공기, 항타기 및 항발기</b>	
	제221조의2 (충돌위험 방지조치)	-	<b>[신설] 1항</b> - 굴착기에 충돌 방지를 위한 <b>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</b>	
			<b>[신설] 2항</b> - 굴착기 작업 전,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<b>부착상태와 작동여부를 확인</b> 해야 한다.	2023.07.01. 시행
	제221조의3 (좌석안전띠의 착용)	-	<b>[신설] 1항</b> -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<b>좌석안전띠를 착용</b> 하도록 해야 한다. <b>[신설] 2항</b> -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<b>좌석안전띠를 착용</b> 해야 한다.	2023.07.01. 시행
굴착기 안전 기준 개정	제221조의4 (잠금장치의 체결)	-	<b>[신설]</b> - 사업주는 굴착기 쿼터풀러에 버킷, 브레이커,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<b>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</b> 해야 한다.	2023.07.01. 시행
	제221조의5 (인양작업 시 조치)	-	<b>[신설] 1항</b> 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. 1.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굴착기 (작업장치에 달기구 부착 등) 2.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3.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<b>[신설] 2항</b> -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 1.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.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.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.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.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<b>[신설] 3항</b> - 인양작업 시 달기구의 사용(와이어로프 등)에 관해서는 163조~170조 까지의 규정 준수	

구 분	관계 법령	개정 전	현 행 (2022.10.18. 시행)	비 고
화재감시자 방연마스크 기준 명확화	제241조의2 (화재감시자)	<b>[기존] 3항</b> -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<b>방연마스크 등</b>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	<b>[개정] 3항</b> - <b>KS인증 혹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정기준에 적합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</b>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 * KS 인증 : KS M 6766,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: 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)	
이동식크레인 근로자 탑승 기준 완화	제86조 (탑승의 제한)	<b>[기존] 2항</b> -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.	<b>[개정] 2항</b> - <기존 동인> 다만,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<b>기중기</b>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예외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b>기중기</b>            ✓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 : KS B ISO 12480-1            * e나라 표준인증 → 국가표준 → 검색(열람가능)         </div> 	
항타기 및 항발기 안전 기준 개정	제207조 (조립·해체 시 점검사항)	<b>[기존] 1항 (조립 시 점검)</b> 1.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. 권상용 와이어로프 ·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.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빼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	<b>[개정] 1항 (조립·해체 시 점검사항)</b> 1. 권상기에 빼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.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. 그 밖에 조립·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·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<b>[신설] 2항</b> 1.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. 권상용 와이어로프 ·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.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빼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.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. 리더(leader)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. 본체 ·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. 본체 · 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 · 마모 ·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	
	제209조 (누너짐의 방지)	<b>[기존] 2, 4항 현행 유지</b> 1.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<b>각부나 가대의 침하</b> 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· 깔목 등을 사용할 것 3.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빼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5.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<b>버팀대를 3개 이상</b> 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·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.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7.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	<b>[개정] 1,3항</b> - 각부, 가대 → <b>아웃트리거·받침 등 지지구조물로 명칭 변경</b> <b>[개정] 5항</b> - <b>상단 부분은 버팀대 ·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, 그 하단 부분은</b> 견고한 버팀 ·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( <b>갯수 규정 삭제</b> ) <b>[삭제] 6, 7항</b> * <b>2, 4항 현행 유지</b>	

구 분	관계 법령	개정 전	현 행 (2022.10.18. 시행)	비 고
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공간 특례	제626조 (상시 가동되는 급·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)	-	<p><b>[신설] 1항</b> - 밀폐공간에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급·배기 환기장치 설치 및 화재·폭발 등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 완화 * 619조 2,3항, 620조, 621조, 623조, 624조, 640조 미적용</p> <p><b>[신설] 2항</b> - 상시환기장치의 작동·사용상태,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1회 이상 점검·조치 실시</p> <p><b>[신설] 3항</b> - 2항에 따른 점검결과(점검일자, 점검자, 작동상태, 적정공기 유지상태 등)를 출입구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</p>	
화염방지기 설치 예외 기준 변경	제269조 (화염방지기의 설치 등)	<p><b>[기준] 1항</b> - 인화성 액체·가스 취급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,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</p>	<p><b>[개정] 1항</b> -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규정 중 ‘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 하는 경우’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(2024.10.18. 까지 설치)</p>	
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	제449조 (유해성 등의 주지)	<p><b>[기준] 2항</b>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12 제1호12)·44)·56)·67)·96)·106) 물질 취급 시 근로자 작업 시작 전,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<b>[개정] 2항</b> -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12 제1호13)·46)·59)·71)·101)·111) 물질 취급 시 근로자 작업 시작 전,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<b>[개정] 별표12 (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)</b> -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추가 : 니트로톨루엔, 디부틸프탈레이트, 벤조피렌, 붕소산 사나트륨(무수물, 오수화물), 산화붕소, 와파린, 포름아미드, 시클로헥실아민 - 생식독성 1A·1B 7종 → 특별관리물질 지정</p>	2023.10.19. 시행
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	제628조의2 (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)	-	<p><b>[신설]</b> -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의 조치사항 신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점검·유지·보수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</li> <li>점검 수행 근로자 사전 지정, 출입기록(출입일시, 점검기간 등) 작성하여 관리 *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/ 카드키 출입 시 예외</li> <li>방호구역 출입 시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정공기 상태 유지(환기)</li> <li>차단판, 안전핀 등 밸브 안전조치 및 해당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</li> <li>근로자 대상 반기1회 이상 교육 실시(이산화탄소의 위험성, 대피방법 등)</li> <li>배관·밸브 교체 등 작업 시 보호구 지급·착용 지시(송기마스크, 공기호흡기)</li> <li>설비 작동과 관련된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 실시</li> </ul> </li> <li>방호구역 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 가능 상태로 변경할 것</li> <li>소화설비 임의 작동 금지 및 해당 내용을 출입구 / 수동조작판 등에 게시</li> <li>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·유효상태 유지 * 비상구 까지 거리 10m 이상 및 소화용기100개 이상일 경우</li> <li>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내용을 출입구에 게시</li> </ol>	